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중 소 기 업 인 력 지 원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우수근로자(5년 이상 근속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2.10.18., '23.4.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위탁 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우수근로자의 선발기준·절차 및 지원내용 마련(안 제27조의2)

- 1)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
- 2) 우수근로자 선발 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3)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 연수를 지원

나.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3. 1. 26. ~ 3. 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를 선발하려면 미리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우수근로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연수 지원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직무연수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근로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17조의2제1항제2호”를 “제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7조의2(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u> <u>법 제2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u> <u>1. 포상 수여</u> <u>2. 그 밖에 근로자의 장기채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u>	<u>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u> <u>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우수 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근로자를 선발하려면 미리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 <u>③ 우수근로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연수 지원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직무연수를 말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근로자의 선발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한다.</u>
제31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 ----- ----- -----

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1. ~ 5의2. (생략) 6.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 후 3년 경과 여부 확인 6의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실시 6의3. ~ 12. (생략) ② (생략)	-----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삭제> 6의2. 제17조의2제1항----- ----- 6의3.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448